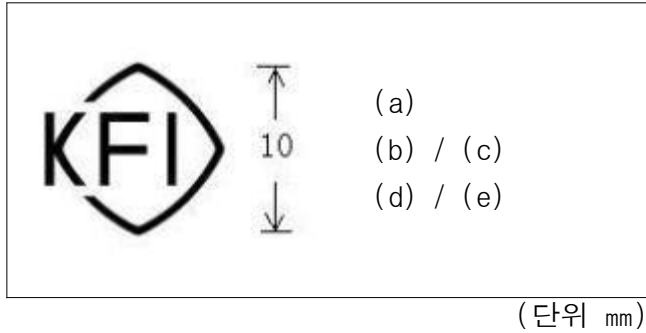


제 호				
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				
제 조 자	명 칭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위험물 용 기	종 류		최 대 용 적	ℓ
	형 식		제 조 번 호	
	재 질		수납위험물(품명)	
	차기 정기점검 기한			
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1조제3항에 따라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합니다.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직인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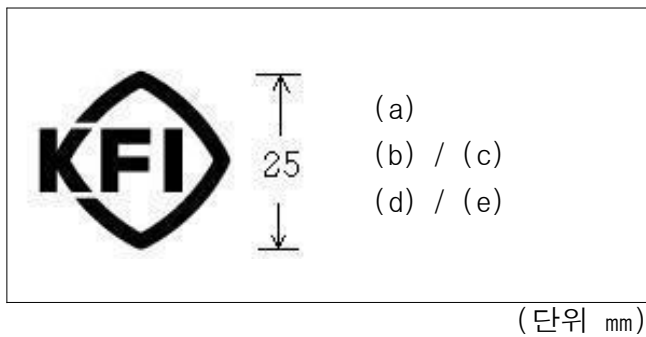
[금속용기 등의 각인 표시]



비고

1. (a)에는 수납 위험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.
2. (b)에는 제조년월을 기재합니다.
3. (c)에는 제조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4. (d)에는 겹침적재시험의 하중을 기재합니다.
5. (e)에는 운반용기의 최대총중량(kg)을 기재합니다.

[포대용기 등의 날인 표시]



[합성수지용기 등의 부착 표시]

